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1,861,071	24,955,832
일반회계		744,666,007	22,339,980
특별회계		87,195,064	2,615,852
	공기업특별회계	31,491,766	944,7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491,766	944,753
	기타특별회계	55,703,298	1,671,09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5,330	22,060
	자활기금특별회계	391,725	11,752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875,250	176,2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7,200	7,716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067,132	62,014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6,430	7,693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433,000	12,990
	수질개선특별회계	45,687,231	1,370,61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